

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단의 선교정책을 세우고 변천하는 상황에서 선교 과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15인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1. 총회 안전심의부 선교부 부장
2. 신학자 1인
3. 목회자 3인(여성목회자 1인 이상 포함)
4. 도시빈민 목회자 1인
5. 농어촌 목회자 1인
6. 특수선교 목회자 1인
7. 여신도회 대표 2인
8. 남신도회 대표 2인
9. 부흥선교단 대표 1인
1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후원협력교회협의회 대표 1인
11. 이주민선교운동본부 대표 1인

제4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 (소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전문인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회교육정책”과 “교단 장기발전계획 지침서” 중의 교회 선교정책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한다.
2. 오늘의 선교적 상황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위원회 산하에 ‘총회 부흥선교단’을 두어 교회 개척 및 부흥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4. 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후원협력교회협의회’를 두어 사업을 시행한다.
5. 위원회 산하에 ‘목회지원 소위원회’을 두어 교회개척을 위한 목회자 교육 훈련사업,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6. 위원회 산하에 이주민선교운동본부를 두어 사업을 시행한다.
7. 총회 위임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9조 (이주민선교운동본부)

1. 본 위원회는 부여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민선교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그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제정
-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